

5-10.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

-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, 그 성격은 일반재원(기타수입, 224-06)에 해당합니다. 우리 군위군은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